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종식)

□개 요

- 동 시유재산변경계획안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2001.6.9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902호로 2001.6.12 우리 위원회에 회부
- 동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토지 3필지 8,357.8㎡(2,532.66평) 과 건물 557.0㎡(168.78평) 등 총 3건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내버스업체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중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는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업체의 차고지로 임대코자 하는 것임.

□주요 사안별 의견

첫째, 동 계획안의 제출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한 의견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2월 제124회 임시회의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 계획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또 다시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은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 사료되며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소요예산은 128억 2천 4백만원이 예상되나 과연 어떠한 예산으로 매입할 것인지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추경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둘째,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 승용차의 급속한 증가와 제2기 지하철의 완전개통 등 버스이용 승객의 절대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버스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따라서 서비스 또한 버스 승객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버스 수요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의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경영 부실로 인한 서비스 불량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과의 연계노선 등 시민편의 위주의 노선개편의 기반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동 계획안은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동 계획안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업체는 없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안이 수립되었는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게 돌아가 불평불만 등 원성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 11명, 재석 11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채상환목적예비비출자

2001년 예산에 편성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2,508억원을 '00말 현재 서울시 전체부채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출자규모 - 총 2,508억원(지하철공사 1,396억원, 도시철도공사 1,112억원)
 ○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고이율 부채중 만기가 도래되는 지하철공사의 1,100억원과 도시철도공사의 800억원을 상환토록 배분하고
 ○ 잔액 608억원은 2000년도 지하철 양공사 운영개선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하철공사 296억원, 도시철도공사 312억원을 추가 배분하여 고이율 신규차입 규모를 축소토록 지원
 ※ 2001년도 만기도래 고이율 부채현황 (2001. 7월 이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차입선	이자율	차입일시	거치-상환	만 기
계	190,000					
지하철공사	소 계	110,000				
	금융자금	50,000	외환은행	7.35%	00. 8.20	1 - 0 2001년
	공사채	10,000	삼성증권	8.95%	99.10.28	2 - 0 2001년
		50,000	삼성증권	9.75%	99.11.24	2 - 0 2001년
도시철도공사	소 계	80,000				
	공사채	30,000	대우증권	7.36%	00.10.18	1 - 0 2001년
		10,000	대우증권	7.15%	00.11.28	1 - 0 2001년
		40,000	동부 등	6.95%	00.12.13	1 - 0 2001년

※ 2000년 양공사 운영개선실적 점검결과
 - 지하철공사 : 91.15점 득점 (296억원)
 - 도시철도공사 : 96.03점 득점 (312억원)
 □ 지원원칙
 ○ 만기도래되는 고이율 부채 우선상환
 -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 고이율부채 상환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 전체 부채규모 감소를 위한 부채상환목적예비비 목적상 타당하며, 양공사 자금운용면에서도 유리
 ○ 잔액은 양공사 2000년 운영개선실적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 부채대책 및 부채상환목적예비비편성 취지에 따라 양공사 운영개선 실적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 촉진
 □ 집행방법 : 자본금으로 출자
 ○ 시에서 공사에 지원한 예산은 납입자본금으로 누적되며, 공사지분은 출자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본금으로 지원
 ※ 예산과목 :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교통기획행정, 이전사업비, 출자금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시내버스 부실업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인수·합병이나 면허취소되는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차고지를 우리시가 매입하여 부채 및 체불입금을 청산토록 지원하고
 ○ 매입차고지는 인수업체 또는 기존차고 부족업체의 차고지로 사용허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 취득 3건 추가 (토지 2건, 건물1건)
 - 토지 : 3필지 8,357.8㎡ (2,532.66평)
 - 건물 : 557.0㎡ (168.78평)
 ※ 건물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있는 건물임.

(다음 페이지에 계속)